

창원지방법원 2016. 9. 9 선고 2014가단8815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중회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6. 6. 24.

판결 선고 2016. 9. 9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155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. 5.24. 접수 제47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은 판결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1) D은 2012. 2. 초순경 '원고가 2011. 11. 20.경 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의(이하 '이 사건 결의'라 한다)를 하였다'라는 내용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 의사록 말미에 원고 회원 13명 중 소외 E, F을 포함한 총 8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, 실제로는 위와 같이 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고, 위 E, F이 D에게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었다.

원고의 규약(2004. 11. 21.자로 개정된 것) 제13조 의하면, 원고의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되어있고, 위 결의 당시 원고의 회원은 총 13명이었다.

2) D은 위와 같이 위조한 총회의사록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김해시 C 대 15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대하여 2012. 2. 17. 대표자를 D으로 명의변경등기하고, 2012. 5. 17.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,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## 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김동빈

[별지]

## 의 안

1 1호 의안 : 회장, 총무 보선의 건

회장 총무 2. 2호 의안 : 다음의 사항은 신입회장 에게 위임한다.

1) 붕괴된 종중 봉분의 복원과 조정사업

2) 별초, 성묘, 묘사에 관한 사항.

3) 위 1), 2)와 관련한 필요 경비는 종제를 지분하여 조달한다.

4) 신입회장 의 위임에 따른 종중 소유의 아래 부동산의 등기

부동산상 대표자 변경등리신청에 관한 일체 사항

아 래

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

이 상